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5
----------	-----

제출년월일 : 1997.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 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기틀을 마련 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함 (안 제13조1·2항 단서 및 제16조의1)
- 나.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채직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함 (안 제18조1항, 3항)
- 다.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제3항)

- 라.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
하도록 함 (안 제20조제2항)
- 마.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안 제20조제3항)
- 바.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
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9항)

□ 관계법령 : 공무원복무규정증개정령 (대통령령 제15244호)

- 첨 부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기타 참고자료 (관계법령등)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1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토요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 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이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25조의1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제26조의2를 제25조의1로 하고,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